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가족부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지원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양육비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성폭력사건 현장점검, 시정·보완요구 실시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동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력 3명(6급 1명, 7급 1명, 관리운영직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 한시정원

제15조(한시정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여성가족부에 두며, 별표 3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별표 1 중 총계 “277”을 “281”로 하고, 일반직 계 “273”을 “27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64”를 “268”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여성가족부 직제 [별표 3]

여성가족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15조 관련)

제15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5급 이하	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4장 한시정원</u> <u>제15조(한시정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여성가족부에 두며, 별표 3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신 · 구 정원 대비 표

■ 여성가족부 직제 [별표 1]

여성가족부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277</u>	<u>281</u>	+4
•	•	•	
•	•	•	
일반직 계	<u>273</u>	<u>277</u>	+4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64</u>	<u>268</u>	+4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0